

202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3258호
- 다. 제출일자 : 2022. 5. 30.
- 라. 회부일자 : 2022. 6. 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1	827,289	852,069	848,928	3,141			99.6
2020	786,692	818,883	812,075	6,808			99.2
2019	813,994	886,097	878,056	5,784	2,256		99.1

- 세입은 당초 예산액이 8억 2,729만원으로 8억 5,207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8억 4,893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6%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14만원이 발생하였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1	1,934,336						1,934,336	1,675,987	32,185	226,164 (11.7%)
2020	2,432,708				18,000		2,432,708	2,153,251		279,457 (11.5%)
2019	2,466,919	12,430	56,621	7,197			2,535,970	2,114,417		421,553 (16.7%)

- 예산현액은 19억 3,433만원이며, 이 중 16억 7,59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인 2억 2,616만원이 발생함.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 없음.
- 예산의 전용 없음.
- 예산의 이체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5)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사업비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 :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21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억 2,616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1.7%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율 (%)	비고
2021	1,934,336	226,164	11.7%	
2020	2,432,708	279,457	11.5%	
2019	2,535,970	421,553	16%	

〈 발생원인별 내역 〉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사유 미발생 : 2.3백만원
 - 건설기술 심의회 운영 : 1.4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 0.9백만원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절감 : 없음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 : 54백만원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 26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 4백만원
 - 기본경비 : 23백만원
 - 그 밖의 사항들 : 1백만원
- (기술심사담당관) 낙찰차액 : 0.3백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 0.3백만원
- (품질시험소) 예산절감 : 없음
- (품질시험소) 집행잔액 : 89백만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 : 31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 : 5백만원
 - 기본 경비 : 53백만원
- (품질시험소) 낙찰차액 : 78백만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 : 6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 72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21	827,289	852,069	848,928	3,141			99.6
2020	786,692	818,883	812,075	6,808			99.2
2019	813,994	886,097	878,056	5,784	2,256		99.1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8억 2,729만원이었으나 실제 8억 5,207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 중 수납액은 8억 4,89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6%이며, 미수납액은 314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세수추계 (결산서 p.14~15)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8억 5,207만원은 예산현액 8억 2,729만원의 102.9%에 해당하며, 이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크게 발생한 주요 항목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사유
기술심사담당관					
그외수입	12,000	7,200	7,200	△4,800	○공사, 공단 심의 요청 건수 변동
지난연도수입	-	6,798	4,497	6,798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추후 납부
과징금	-	30,000	30,000	30,000	○영업정자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사유 발생
기타과태료	38,702	102,485	101,645	63,783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품질시험소					
기타사용료	4,547	634	634	△3,913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세목 착오 추계로 차액발생
주차요금수입	-	8,908	8,908	8,908	○코로나19 확산방지차 자가용 이용 수입 증가 및 세목 착오 추계
증지수입	769,854	681,750	681,750	△88,104	○건설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공사현장 감소로 수입 감소
기타이자수입	-	347	347	347	○기관명의 통장 발생이자 세입조치
불용품매각대금	-	800	800	800	○신차 구매에 따른 기존차량 매각비용
그외수입	2,186	13,082	13,082	10,896	○투수지속성능 검증 비교시험 참여에 따른 의뢰 수수료 수입 등

○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 ‘그외수입’의 경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에 해당하며 예산액 1,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720만원(60%)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 이후 공사, 공단 등으로부터 정밀안전, 설계심의 등의 요청 건이 당초 예측(15건→9건)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 동 항목의 세수 추계는 최근 3년간의 평균수수료에 평균 부과 건수를 반영하여 추계하였는데, 이는 심의 요청건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됨.
-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679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449만원의 수납이 발생하였음.
 -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1)에 근거한 건설기술용역업 퇴사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3개 업체에 대해 13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그 해에 징수하지 못하고 누적된 것임.
 -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13건의 과태료 중 2개 업체의 9건(449만원)은 체납분 징수 노력에 의해 수납완료 하였으나, 1개 업체의 4건(230만원)은 체납분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장기체납액인 관계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 추계가 쉽지 않다는 점은 있으나,
 - 예산 편성 시부터 예산액을 추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징수의지가

1)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체납분에 대한 특단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과징금’²⁾의 경우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허위등록, 부정행사, 감리소홀’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요청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3천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³⁾에 따른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31조⁴⁾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법령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⁵⁾가 부과된 해당업체가 영업정지와 3천만원의 과징금 중 과

2) ‘과징금’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32(과징금)에 따른 부과금

- 「건설기술진흥법」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6. 생략

7.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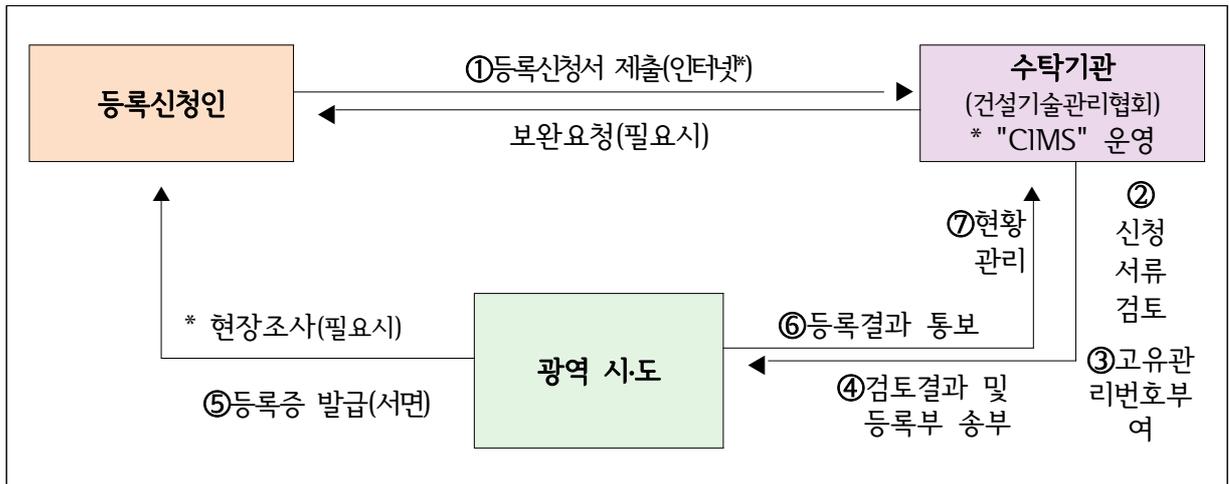
5) [별표6]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된 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 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 만원	영업 정지 12 개월	1억 2천 만원

징금 납부를 택함으로 인해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참고로, 해당업체는 2021년 10월 22일 과징금을 모두 완납하였음.

[표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



○ ‘기타과태료’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인력 변경 신고’ 지연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예산액 3,87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억 248만원으로 6,37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표 3] 건설기술용역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b)-(a)
2018년	34,250	41,112	36,070	6,862
2019년	35,000	20,325	20,325	-14,675
2020년	35,000	40,065	40,065	5,065
2021년	38,702	102,485	101,645	63,783

- 이는 협회로부터 위반 건수를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워 최근 3년간('18년-'20년) 평균 부과건수를 반영하여 세입추계 하였으나, '21년 실태조사를 통한 위반업체 적발증가 및 납부독려로 예측보다 위반 통보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파악됨.

[표 4]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p>① $125\text{건} \times 244,279\text{원} \times 94\% = 28,702\text{천원}$ ※ '18~'20년도 변경신고 자연과태료 평균 부과건수 \times 1건당 전년도 평균 부과액 \times 평균 징수율</p> <p>②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최소부과 건수 $1\text{건} \times 10,000\text{천원} = 10,000\text{천원}$</p> <p>① + ② = 38,702천원 (2021년도 기타과태료)</p>

- 다음으로,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기타사용료'는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과 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받는 수입으로, 예산액 45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63만원으로 391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5] 기타사용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p>① 2021년 주차요금 세수추계 : 391만원 산출액 : $3,871\text{천원}(2020\text{년 전망액}) \times 1.011 = 3,913\text{천원}$ 산출내역 - 정기주차 : $300,0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1.011 = 3,639,600\text{원}$ - 일일주차 : $22,56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1.011 = 273,700\text{원}$</p> <p>② 청사 사용료 수입(태양열발전시설 사용료) : 63만원 [공시지가(2,755,000원) \times 건축부지면적(1,278.8㎡) \times 옥상지수(0.018)] \times 요율(10/1000) = 634,200원</p> <p>① + ② = 454만원(기타사용료 세입추계액)</p>
--

- 동 항목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요인은 '주차요금수입'이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기타사용료'에 포함되어 편

성되어 있었으나 결산 시에는 ‘주차요금수입’ 항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징수결정 되었기 때문임.

- ‘20년 7월 21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표 6] 참고)’에 의하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은 ‘주차요금수입’으로,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은 ‘기타사용료’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품질시험소 주차수입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세입편성이나 결산 시에 ‘주차요금수입’으로 편성·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6] 기타사용료 세입과목 개정사항(2020. 7. 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현 행				개 정			
과목 구분		현행 과목구분 설정		과목 구분		개편 과목구분 설정	
관	항	목	세목	관	항	목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 사용료수입			
		08	기타 사용료			08	주차 요금 수입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1. <u>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u>
			2. <u>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증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u>			09	기타 사용료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

- 해당 사안은 업무담당자가 개정된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판단되므로, 향후 행정미숙으로 인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법령, 기준 등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들이 이를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주차요금수입’은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 및 민원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이며,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 89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위 ‘기타사용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 ‘증지수입’은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각종 계량기 수수료로 예산액 7억 6,985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6억 8천 175만원으로 8,81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21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건설경기의 악화로 공사현장이 감소하여 건설공사 품질점검 시험의뢰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1,202건→1,119건)한 것에 따른 것임.

[표 7] 최근 3년간 품질점검(증지수입) 건수

(단위 : 천원)

년도	건 수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2019년	1,218	650,737	597,470	597,470
2020년	1,202	641,477	643,829	643,829
2021년	1,119	642,985	566,028	566,028

- ‘기타이자수입’은 기관명의 통장에 대한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금회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34만원을 징수결정 하였는데 이자수입은 매년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자수입이 예견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세수추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 ‘불용품매각대금’의 경우 품질시험소가 건설현장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현장점검용으로 사용하던 관용차량([표 8] 참조)을 내구연한 경과로 폐차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대금으로 금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80만원)이 발생하였음.

[표 8] 최근 5년간 불용차량 매각 현황

회계연도	차명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사용년월	내구연한	매각가액 (폐차대금)
2021년	스타렉스	70오 6278	2010.01.27	10년 8월	10년	800(천원)
2018년	스타렉스	80오 4152	2005.03.03	12년	10년	2,000(천원)

- 이는 서울시가 불용차량 처분의 경우 1차로 타 기관 관리전환을 타진한 후, 미전환 시 양여 또는 폐기(매각)하는 절차⁶⁾로 진행하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어려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 해당 불용의 경우 ‘18년 결산 시에도 동일하게 지적받았던 사안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불용품 매각의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에도,
- 금회 동일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노력 및 업무당사자간의 인수인계가 미흡했다 판단되며, 이는 의회 결산 승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6)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제166호(2020.7.6.)

[표 9] 향후 5년간 내구연한 경과 예상 차량 현황

연번	차량 및 장비명	수량	내구연한	매각(폐차) 예정년도	용도
1	64어 2038 (아반떼승용차)	1	10년	2024년	건설현장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현장점검

- ‘그외수입’은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218만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으나 1천 89만원이 증가된 1천 308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21.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투수블록의 투수지속성능 시험 방법 표준(KS) 제정을 위해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시험방법 유효성 검증 시험을 의뢰함에 따라 시험 수수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여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됨.

다) 미수납액 (결산서 p.14~15)

-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680만원) 대비 366만원 감소한 314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230만원과 기타과태료 미수납액 84만원임.
- 지난연도수입과 기타과태료 항목의 미수납액은 전액 한 업체([표 10] 참고)에 대한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해당업체는 경영악화로 인해 과태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라,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통한 자동차 압류 등의 관련부서의 협업 징수를 진행하고 있음.

[표 10] 기술인력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미수납현황

(단위 : 원)

연번	법인명	과세년월	본세	증가산금	합계	비고
1	오션엔지니어링(주)	2018-04	375,000	200,250	575,250	자동차 압류
2	오션엔지니어링(주)	2018-04	375,000	200,250	575,250	자동차 압류
3	오션엔지니어링(주)	2018-04	375,000	200,250	575,250	자동차 압류
4	오션엔지니어링(주)	2018-04	375,000	200,250	575,250	자동차 압류
5	오션엔지니어링(주)	2021-02	375,000	47,250	422,250	-
6	오션엔지니어링(주)	2021-03	375,000	42,750	417,750	-
	소 계	4건	2,250,000	891,000	3,141,000	

- 그러나 동 업체 체납의 경우 '18년부터 이어온 장기체납에 이어 금회 미납분이 다시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자칫 습관성 납세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한 징수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세 출 결 산

■ 기술심사담당관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1	741,081	-	-	-	-	-	741,081	683,394	-	57,687 (7.8%)
2020	918,097	-	-	-	-	-	918,097	812,480	-	105,617 (11.5%)
2019	754,388	-	-	-	-	-	754,388	567,670	-	186,718 (24.8%)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7억 4,108만원으로 이 중 92.2%인 6억 8,339만원을 지출하고 7.8%인 5,769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19)

-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억 4,108만원 대비 7.8%인 5천 76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최근 3년간 불용율을 살펴보면(24.8%→11.5%→7.8%)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1]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23,307	27,888	6.6
2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49,915	1,844	3.7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175	6	0.0
4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0,000	3,978	4.4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36,378	378	1.0
6	기본경비	126,306	23,593	18.7
	합 계	741,081	57,687	7.8

- 먼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회 예산현액 4억 2,330만원 중 3억 9,541만원을 지출하고 6.6%인 2,788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주요 불용사유로는 위원수당 집행잔액 1,093만원과 운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1,375만원에 해당함.
 - 운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2019년 12월에 설계 VE업무가 계약심사과에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워크숍 운영을 위해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운영으로 불용된 것인데,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한다면 부득이한 불용으로 볼수도 있으나, 해당사업의 예산편성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2020년도였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추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하겠다.
- 다음으로,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000만원 중 8,602만원을 지출하고 4.4%인 39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표 12]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서
2021	90,000	89,985(99.9%)	86,022	95.6%	11개 기관 15개 부서
2020	95,000	88,163(92.8%)	81,995	86.3%	6개 기관, 10개 부서
2019	95,000	62,445(65.7%)	54,605	57.5%	8개 기관, 9개 부서

- 총 27건의 사업에 8,998만원을 배정해 8,602만원을 지출하여 3억 3,953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표13] 참고)를 보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투입예산에 비해 사업효과가 크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면밀

한 수요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매해 증가하고 있는 집행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표 13]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사업 효과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배정금액	집행금액	외주용역 예상금액	절감액
	계		89,985	86,022	425,554	339,532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정원 시설물 정비	3,027	2,882	4,165	1,283
2	서울시립대학교 (사설과)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12,240	12,212	42,752	30,540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외 1건	7,656	7,418	8,222	804
4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공원 내 기초질서 관련 안내시설 정비	6,120	5,814	3,837	-1,977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외 6건	21,054	19,158	22,846	3,688
6	강동구	'21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외 1건	7,188	7,188	30,146	22,958
7	성북구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	1,284	1,284	2,458	1,174
8	중랑구	망우동상당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5,180	14,117	288,656	274,539
9	동대문구	중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5,100	4,947	6,577	1,630
10	광진구	미세먼지조감 조림사업	4,488	4,354	8,222	3,868
11	성동구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금호터널 알대) 외 1건	6,648	6,648	7,673	1,025

- ‘기본정비’는 해당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예산현액 1억 2,630만원 중 1억 271만원을 지출하고 18.7%인 2,359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주된 불용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방문 및 출장 자체 지침⁷⁾으로 인한 국내여비 잔액 2,179만원으로,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부득이했다 할 것임.
- 다만,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앙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언하였으므로, 이에 대비한 예산편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명시이월

- 명시이월 없음.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 체제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과-21926(2021. 7. 2.)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불요불급한 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및 참석 금지**
 -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부서 방문 및 부서간 대면회의 금지
 - 동거가족 감염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1/3 시행
 - 확진자 소속 부서원 및 밀접접촉자 추가 PCR 검사 실시

■ 품질시험소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1	1,193,255						1,193,255	992,593	32,185	168,477 (14.1%)
2020	1,514,611				18,000		1,514,611	1,340,771		173,840 (11.5%)
2019	1,712,531	12,430	56,621	7,197			1,781,582	1,546,747		234,834 (13.1%)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11억 9,326만원이고, 예산대비 지출액은 83.2%인 9억 9,259만원이며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비용에서 3,21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4.1%인 1억 6,848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0)

- 품질시험소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1%인 1억 6,848만원으로 전년(11.5%) 대비 증가(2.6%p ↑) 하였음.

[표 14]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 번	세부사업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자재 품질시험	329,697	37,244	11.3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418,750	72,388	17.3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64,430	5,609	8.7
4	기본경비	380,378	53,236	14.0
	합 계	1,193,255	168,477	14.1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 중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3억 2,970만원 대비 11.3%인 3,724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품질시험관리시스템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650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5개 항목에서 발생한 지출잔액 3,070만원 등에 해당함.
- 지출잔액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 공사현장 점점 감소 등에 따른 외부위원 수당과 시험 장비 수수료 미집행 잔액으로,
- 사무관리비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시 전회에 비해 8.8% 증가 (1억 5,509만원→1억 6,881만원)한 1억 6,88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되나,

- '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워크숍 및 외부회의가 축소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금회 불용액의 발생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되는바, 예산편성 시 사회적 환경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15] 건설자재품질시험 예산 집행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예산집행	집행잔액	불용율(%)
건설자재 품질시험	계	329,697	292,453	37,244	11.3%
	사무관리비	168,813	148,224	20,589	12.2%
	공공운영비	75,810	66,660	9,150	12.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	6,522	1,479	18.5%
	특정업무경비 전산개발비	24,600	23,903	697	2.8%
	시험연구비	52,474	47,145	5,329	10.2%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의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현액 4억 1,875만원 대비 17.3%인 7,23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사유는 전액 낙찰차액에 의한 것으로, 장비를 구입할 시에는 장비 구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기본경비'의 경우 예산현액 3억 8,037만원 대비 14%인 5,323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금회 불용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위탁교육 축소 집행잔액 1,500만원과 대면출장 자제에 따른 국내여비 잔액 3,000만원임.

- 동 불용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시 계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이사항은 없으나, 동일사유로 인한 불용이 다수 발생한바, 추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다방면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동일사유로 인한 과다 불용을 방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명시이월

- 명시이월 없음.

바) 다음연도 사고이월(결산서 p.50)

- 품질시험소의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1건으로, 시험장비 구매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업체의 제작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3,218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표 16] 예산 사고이월 내역

(단위: 천원)

예산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세부	통계목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자산 물품취득비 (405-01)	418,750	314,176	32,185	-

- 이는 서울시가 사용하던 아스콘 시험방법([표 17] 참고)의 용제 유해성에 따라 시험방법의 개선이 필요하여, 타기관 시험방법 조사 및 전문가 자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17] 추출법 및 연소법 장단점 비교

구 분	서울시-추출법 (KSF2354)	타기관-연소법 (KSF2490)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오차가 적음 · 결과값이 비교적 정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질을 사용하지 않음 · 시험자의 숙련도 영향이 적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 사용으로 유해성이 있음 · 시험자의 시험건수가 한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분손실 첨가제 연소로 시험오차 발생 · 연소 가스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없음.